

유학생 주택종합보상 “Ryuhosyo”

~배상 사고에 대비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에서의 연대보증인(*1)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일본에서는 방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1)이 필요합니다. Ryuhosyo는 학교 관계자가 연대보증인(*1)이 되는 경우에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연대보증인...임차인(*2)이 집세 등을 내지 않을 때, 대신 임대인(*3)에게 지불하는 사람.
연대보증인이 대신 지불한 경우, 임차인(*2)은 연대보증인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2) 이 제도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인 유학생을 가리킴.

(*3) 집주인이나 관리회사 등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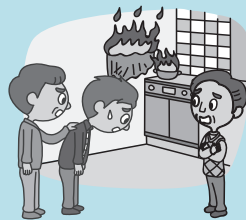
1. 보상 내용

이 제도는 해외여행보험(①유학생 배상책임보험과 ②상해후유장애보험)과 보증인 보상기금(③보증인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보상 내용은 반드시 “해외여행보험(보상의 개요)”, “보증인 보상기금(보상의 개요)”(P.5)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①유학생 배상책임보험



보행자와 충돌!
부상을 입혀 버렸어...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버렸어...

유학생 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또는 <유학을 위한 숙박·거주시설의 사용 등에서의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방에 가한 손해에서는 화재, 폭발, 파열, 누수 등으로 인한 물에 젖는 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②상해후유장애보험



스키를 타다가 나무와 충돌해서
후유장애가 생겨 버렸어...



유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나 스포츠 등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부상을 바탕으로, 사고가 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정도에 응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통상적인 부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보증인 보상

임차인이 집세나 원상회복비, 공익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대신 지불한 경우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보상 기간 중에 물건의 해약·명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의) 해외여행보험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계약자가 되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과의 사이에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주의) 보증인 보상기금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 보상대상자

○해외여행보험(유학생 배상책임보험 · 상해후유장애보험): **유학생**

Ryuhosyo 협력학교인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및 법무대신의 고시를 바탕으로 정해진 일본어 교육기관에 입학한 분 및 입학이 확실한 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유학'을 보유한 분

○보증인 보상기금(보증인 보상):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

유학생이 민간숙소 등에 입주할 때,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인 기관 · 개인

- ①대학 등 · 일본어 교육기관 및 그 교직원(유학생 센터장 · 유학생 과장 등)
- ②지역의 국제교류협회 · 센터 등

3. 보상 기간

보상 기간은 유학생의 체류 기간에 따라 1년간 또는 2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Ryuhosyo에 가입해 있는 경우 원보상 기간 만료일까지 가입 절차를 행함으로써 6개월간의 보상 기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개시일(시기)	보상 종료일(종기) ^(*6)
<신규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절차를 행한 다음 날^(*4) · 임대차계약 개시일 	개시일 당일 전날의 오후 12시까지
<계속가입>	원보상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5) 의 오전 0시부터	

(*4) 유학생이(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보험료 등 부담금을 납입하고 또한 학교로부터 가입자 부분을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

(*5) 이미 Ryuhosyo에 가입한 분이 보상 기간 만료 전에 계속을 위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6) '유학'의 체류 자격에 의한 체류 기간이 종료한 경우나, 졸업 또는 퇴학 등에 의해 학교에 재적하지 않게 된 경우 혹은 보증인 보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종료하므로 해약 절차를 행해 주십시오.

<예>

보상 기간	보상 개시일	보상 종료일
1년간	2024년 3월 1일 오전 0시	2025년 2월 28일 오후 12시
2년간	2024년 3월 1일 오전 0시	2026년 2월 28일 오후 12시
6개월	2024년 3월 1일 오전 0시	2024년 8월 31일 오후 12시

(주의) 보상 기간은 잔존하는 체류 기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덧붙여, 보상 기간 1년간 또는 2년간에 재차 가입하여 보상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 잔존하는 체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보상 기간 1년간으로 가입
- 잔존하는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①보상 기간 1년간으로 가입 후 6개월 연장 또는
②보상 기간 2년간으로 가입

4. 보험료 등 부담금

보상 기간	1년간	2년간	6개월(연장) ^(*8)
보험료 등 부담금 ^(*7)	4,000엔	8,000엔	2,000엔

(*7) 보험료 등 부담금은 해외여행보험(유학생 배상책임·상해후유장애)보험료와 보증인 보상기금 가입금을 합한 것입니다.

(*8) 기존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액·보상금액

보상내용	보상대상자	보험금액·보상금액(지급 한도액)
①유학생 배상책임	유학생	1 사고 5,000만 엔 한도 ^(*9)
②상해후유장애		240만 엔 한도 ^(*10)
③보증인 보상	보증인	30만 엔 한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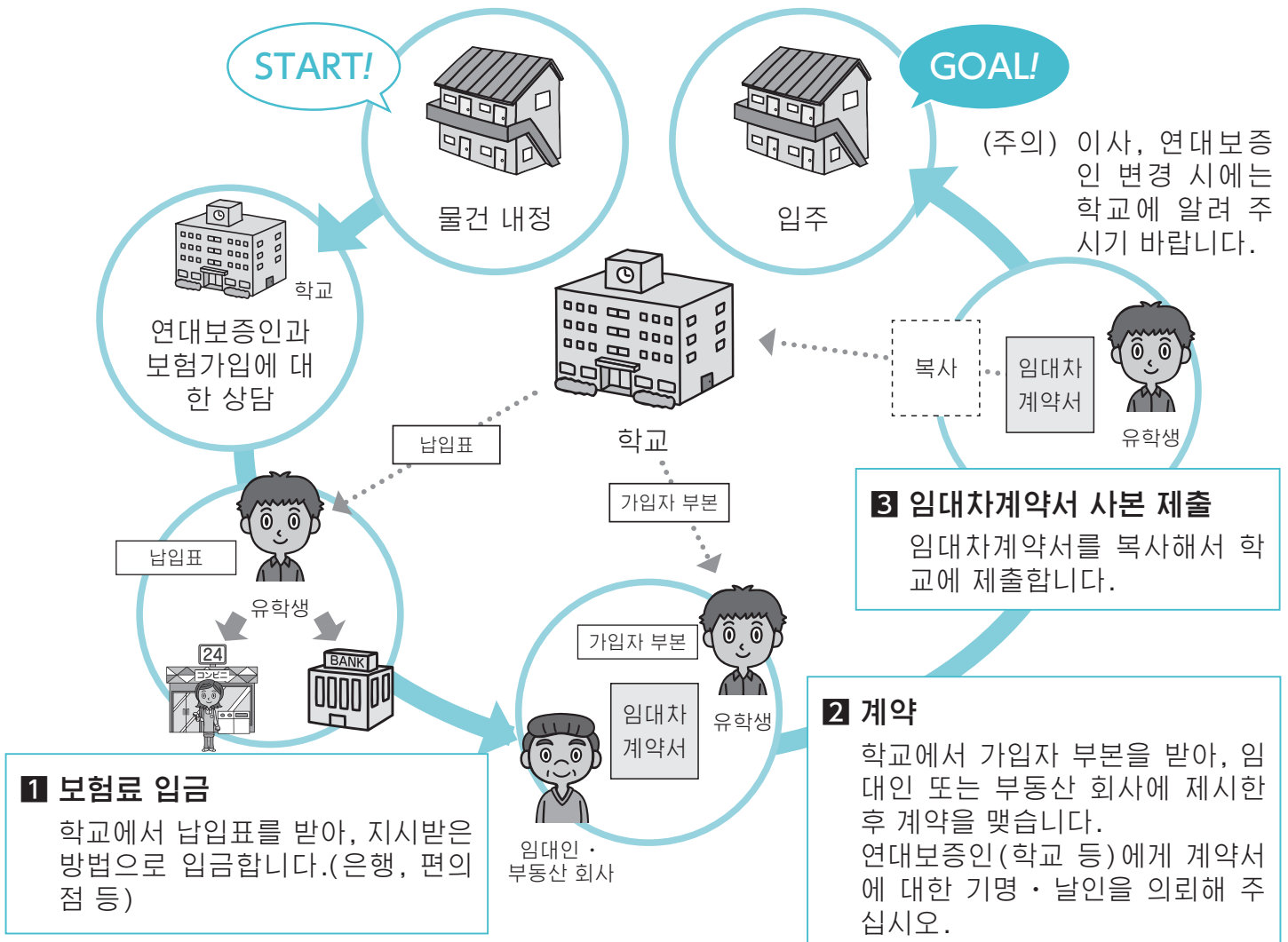
(*9) 1 사고당 상한 금액입니다. 덧붙여, 면책금액(피보험자가 자기 부담하는 금액)은 0엔입니다.

(*10) 보상 기간을 통한 합계의 상한 금액입니다. 사고 횟수에 한도는 없습니다.

(*11) 임대차계약일이 2022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학생·계속가입 보상기간이 2022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①집세 체납은 3개월까지, ②원상회복 비용은 10만 엔까지로 하며, ①과 ②의 합산액이 30만 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6. 신청 방법

이 제도를 신청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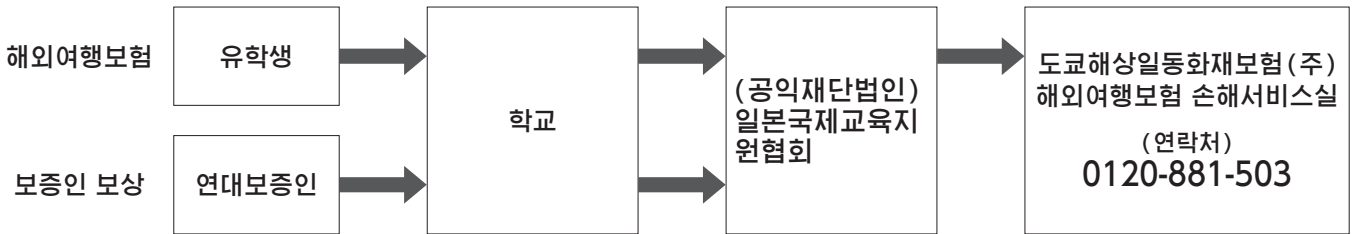


■가입 시의 주의사항

- ① **신청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해 주십시오(고지 의무).**
가입 시에는 신청 절차의 기재 사항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점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또는 인수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 기간 중에 피켈 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산악등반, 루지, 봅슬레이, 스킨레톤,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 라이트기, 울트라 라이트기 등을 말하며, 패러플레인 등의 낙하산형 초경량 동력기 제외)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
· 보상 기간 중에 항공기 조종을 하는 경우(단, 업무상의 항공기 조종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 보상 기간 중에 자동차 등의 승용구에 의한 경기, 시운전, 경기장에서의 프리 주행 등을 하는 경우
· 보상 기간 중에 위험한 일(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 ② **다음 사항에 대해 미리 양해 바랍니다.**
· 가입 시,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귀국 예정이 연장된 것을 이유로 하는 보험 기간의 연장 신청은 인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③ **귀국 예정이 없는 분이나 일본에 영주하시는 분을 피보험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 시에 주재 상황 등을 신고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④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된 경우 등의 취급에 대하여:** 인수 보험회사의 경영 파탄 시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 파탄된 경우에는 이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보상 대상이 되며, 보험금, 반환금 등은 원칙적으로 80%(파탄 보험회사의 지급 정지로부터 3개월간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까지 보상됩니다.
 - ⑤ **계약 내용 및 사고 보고 내용의 확인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등의 사이에서는 상해보험 등에 대해 부정계약에서의 사고 초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보험금의 적정하고 신속·확실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및 사고 발생 시, 동일 피보험자 또는 동일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상황이나 보험금 청구의 상황에 대해(일반사단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계약 정보 등에 의해 확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확인 내용은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한 점은 인수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시의 대응



!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 ① **사고의 통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일시, 장소, 피해자명, 사고 상황 등을 30일 이내에 학교를 경유하여(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로 통지해 주십시오.
- ② **배상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교섭을 행하는 '합의교섭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담당부서의 조언을 바탕으로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교섭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학생이 일본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보험회사와의 창구가 되어 주십시오.

■가입 후 주의사항

- ① **통지 의무(가입 후에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보험회사에 연락할 의무):** 가입 후, 계약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학교 또는(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또는 인수 보험회사에 통지해 주십시오. 통지가 없을 때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보상 기간 중에 위험한 일(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에 종사하게 된 경우
- ② **퇴학·출국으로 인해 해약하는 경우는 학교 또는(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주의하실 점

이 팸플릿은 해외여행보험·보증인 보상기금의 내용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사항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불분명한 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P.8 계약자 또는 인수 보험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외여행보험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보험계약자로 하고,(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협력학교에 재적하는 유학생이며 보증인 보상기금에 가입하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 포괄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 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보유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사고 예>

()안은 지급 금액

- 세탁기 급수 호스가 빠져 누수되어 옆방 등에 누수 손실(677만 엔)
- 자전거 주행 중 사람과 접촉하여 부상을 입힘(601만 엔)
- 거실 창가에 놓아둔 간장병이 떨어져서 주차장의 차를 손상(217만 엔)
- 조리 중 실화로 인한 거실과 맨션 공용 부분의 소손(195만 엔)
- 자전거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 오토바이와 충돌해 손상(104만 엔)
- 다른 학생과 씨름 흥내를 내며 놀다가 교실 벽의 파손(2.8만 엔)
- 동결로 인한 수도관의 손상(1.4만 엔)

■ 해외여행보험 (보상의 개요)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유학생 배상책임 보험금	<p>해외 여행 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주택(*12)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13)를 입혀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 (*12) 주택이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유학 또는 여행을 위한 숙박시설 혹은 거주시설을 말한다. (*13) 렌탈회사로부터 계약자 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이 직접 차용한 여행용품·생활용품, 숙박시설의 객실, 숙박시설의 객실 내의 동산(객실 바깥에 있는 안전박스 및 객실의 키를 포함함), 거주시설(방 안의 동산을 포함함)에 끼친 손해(*14)를 포함함. (*14) 거주시설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상이 방인지 방 이외인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손해가 다름. 방의 경우 방에 끼친 손해. 단, 건물 또는 맨션의 호실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하에 한함. ①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방에 끼친 손해 ② 누수, 방수 또는 넘쳐흐른 물에 의해 물에 젖음으로써 방에 끼친 손해. 단, 급배수설비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제외함. 방 이외의 경우 화재, 폭발, 파열 및 누수, 방수 또는 넘쳐흐른 물에 의해 물에 젖음으로써 발생한 손해</p>	<p>손해배상 금액 ※ 1회의 사고에 대해서, 유학생 배상책임 보험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이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로, 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로 인하여 친권자 등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p>	<p>예를 들어, 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15) ② 방사선 조사, 방사능 오염 ③ 계약자 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고의 ④ 직무수행 또는 아르바이트 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배상책임 ⑤ 항공기, 선박(*16), 차량(*17),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⑥ 수탁품에 관한 배상책임(*13)에서 포함하는 물건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⑦ 친족(*18)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쟁 위험 등 면책에 관한 일부 수정 특약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 행위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16) 오토, 수상 오토바이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17) 렌터카를 포함함. 한편, 자전거, 골프장의 승용 카트, 레저 목적으로 사용 중인 스노모빌 등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18)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19)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19)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분 및 호적상의 성별이 동일하지만 혼인관계와 다르지 않을 정도의 실질을 갖춘 상태에 있는 분을 포함함.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약관은 다름.) ① 혼인사(*20)를 가질 것, ② 동거에 의해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것 (*20) 호적상 성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와 같은 관계를 장래에 걸쳐 계속할 의사를 말합니다.</p>
상해후유장애 보험금	<p>해외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한 부상에 의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신체에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p>	<p>(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액의 4%~100%(*21) ※ 보험 기간(보험계약 기간)을 통해 합산하여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21) 개시일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계약은 지급 대상이 '후유장애 등급표'의 제3급 이상의 지급 비율이 되는 후유장애로 한정됩니다. (후유장애 등급표의 한정 보상특약이 자동 세팅됩니다.) 단, 포괄계약에 관한 특약, 기업등에 관한 특약, 특약을 세팅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증권, 보험계약증서 또는 피보험자증에 표시가 있는 경우로, 이 특약이 세팅됩니다.</p>	<p>예를 들어, ①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보험금 수령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22) ④ 방사선 조사, 방사능 오염 ⑤ 무면허·주취·마약 등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부상 ⑥ 싸움이나 자살, 범죄 행위 ⑦ 뇌질환, 심신상실, 임신, 출산, 조산, 유산으로 인한 부상 ⑧ 해외 여행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발생한 부상 ⑨ 피켓·아이젠 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산악 등반, 직무 이외의 항공기 조종, 볼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자동차 등의 승용구를 이용한 경기·시운전 등의 위험한 운동을 행하고 있는 동안의 부상(특별위험담보 특약을 세팅해, 이러한 운동 등에 대응하는 할증보험료를 지불하신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22) 전쟁 위험 등 면책에 관한 일부 수정 특약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 행위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p>

■ 보증인 보상기금(보상의 개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p>임차인인 유학생이 임대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연대보증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집세 혹은 임대료 및 공익비의 지급 (2) 차용 호실 등의 수리 또는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주의) · 보상 기간 중에 해당 대차 물건의 해약·명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 유학생과 연락이 되는 동안에는 우선 연대보증인이 유학생에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다음에 열거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인 유학생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는 인정되지 않는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 가. 광열비, 수도료 나. 반상회비 다. 기타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손해 (2) 연대보증인, 임대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 (3) 집세 등의 공정 타당하지 않은 가격 인상, 환경 악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에 기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불이행에 근거한 손해 (4) 보상 기간의 개시 시에 집세 등의 지급 이행 지체가 발생해 있던 임차인과 관련된 손해 (5) 보상 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6)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 연대보증인 및 협력학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의 변경 또는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7) Ryuhosyo 신청 시에 유학생, 연대보증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p>

[구상권에 대하여]
보증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한 유학생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의 채권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양도된 것으로 하며, 동 협회가 해당 유학생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구상권의 행사에 필요한 유학생의 행방에 관한 조사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사항설명서(계약 개요 · 주의 환기 정보의 설명)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계약 개요 · 주의 환기 정보의 설명

- 본 설명서는 가입하시는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자인(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건넨 보험약관을 따르므로,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본 팸플릿 P.8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계약 개요는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 전에 꼭 읽어 주십시오.
- 주의 환기 정보는 가입하시는 보험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 등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 전에 꼭 읽어 주십시오.
(주의)팸플릿 및 가입자 부분 등 가입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개요의 설명

1. 상품의 구조 및 인수 조건 등

(1) 상품의 구조

이 보험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며,(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협력학교에 재적하는 유학생이며 보증인 보상기금에 가입하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로 하는 포괄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 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보유합니다.

이 보험의 명칭, 계약자가 되는 단체나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P.1 · P.2 · P.8을 참조해 주십시오.

(2) 보상 내용 · 보험 기간(보험의 계약 기간)

①주요 지급 사유(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액, ②주요 면책 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③보험 기간(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P.1~P.3 · P.5를 확인해 주십시오.

(3) 인수 조건(보험금액 등)

이 보험에서의 인수 조건(보험금액 등)은 미리 정해진 보상 기간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상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2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보험료 ·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가입하시는 계약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 · 보험료의 납입 방법에 대해서는 P.3을 참조해 주십시오.

3. 만기 반환금 · 계약자 배당금

이 보험에는 만기 반환금 ·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주의 환기 정보의 설명

1. 고지 의무 · 통지 의무 등

(1) 가입 시의 주의사항

- 보험 제도는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서로 내고 상호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험금 등의 지급이 발생할 리스크가 높은 분 등이 조건없이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가입 시에는 인수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고지 의무)가 있습니다(인수 보험회사는 고지 수령권이 있습니다). 고지 의무의 내용은 P.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고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인수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비록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상태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과 '해제의 원인이 된 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한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외에도 계약의 체결 상황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유가 곤란한 병 · 증상에 대해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고지 의무 위반의 내용이 특히 중대한 경우, 경과 연수와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입 후의 유의사항(통지 의무 등)

보상 기간 중에 위험한 일(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에 종사하게 된 경우의 통지 의무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P.4를 참조해 주십시오. 연락이나 절차 등이 없으면 가입을 해제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차회 개정 계약의 인수

보험금 청구 상황 등에 따라서는, 차회 이후의 계속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 조건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2. 책임 개시기

보험 책임은 원칙적으로 P.2에 기재된 보상 기간(보험 기간)의 개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3. 주요 면책 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P.5를 확인해 주십시오.

4. 보험회사 파탄 시의 취급

인수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4를 참조해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P.7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6.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현재의 가입을 해약, 감액 등을 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보험계약에의 가입을 검토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 ①현재의 가입을 해지, 감액 등을 하시는 경우의 불이익 사항
 - 많은 경우, 반환금은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 ②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시는 경우의 주의사항
 - 새롭게 가입하시는 보험계약에 대해 고지를 하실 때,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고지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가입이 해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새롭게 가입하시는 보험 계약의 책임 개시 시점 이전의 사고 등의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한 해약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그 피보험자에 관한 가입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및 절차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8. 보험금의 청구·지급에 대하여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절차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팸플릿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2)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의 청구에 있어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서류 외,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자의 사고 증명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사고 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주민표, 호적등본 등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또는 증거
- 엑스레이·MRI 등의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영수증 등의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사진 및 견적서 등의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
- 다른 보험계약 등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기재한 지급내역서 등, 당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 또는 증거

(3)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의 가족 중 인수 보험회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4) 배상책임보험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비용 보험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으로서의 변제를 한 경우
- ②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③피보험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인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에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및 도쿄해상그룹^(* 23) 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과거에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를 보험 인수의 판단, 본 계약의 관리·이행, 부대 서비스 제공, 다른 보험·금융상품 등의 각종 상품·서비스의 안내·제공, 설문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 외에 아래 ①에서 ⑥의 이용·제공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 등의 특별한 비공개 정보(민감정보)의 이용 목적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업무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 ①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처(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 보험중립인, 의료기관, 보험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관계처, 금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②계약 체결, 계약 내용 변경, 보험금 지급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손해보험회사, 도쿄해상그룹 내의 다른 보험회사, (일반사단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 ③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와 도쿄해상그룹 각사와의 사이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와 동사의 제휴처 기업 등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 등의 제공·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 ④재보험 인수회사 등에서의 재보험 계약 체결, 갱신·유지·관리, 재보험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내외의 재보험 인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 ⑤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소유권유보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변경·이전 등에 관한 사무 절차, 담보권의 유지·관리·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 ⑥보험 인수의 판단 등, 계약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보험금 청구 정보 등(과거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

(* 23) '도쿄해상그룹'이란, '도쿄해상홀딩스 (주) ' 산하의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 닛신화재해상보험 (주) , 도쿄해상일동안심생명보험 (주) 등이나, 전술한 각사의 자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도쿄해상그룹 각사의 범위 및 제휴처 기업 등의 목록, 도쿄해상그룹 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이용의 관리 책임자,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및 도쿄해상그룹 각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의 홈페이지(www.tokiomarine-nichido.co.jp)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입 내용 확인 사항(의향 확인 사항)

본 확인 사항은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이 고객님의 희망에 합치한 내용이라는 점,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하셨다는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의 각 질문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확인에 있어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 보험 상품이 아래의 점에서 고객님의 희망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팸플릿(중요사항 설명서 포함)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희망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 내용을 재차 검토해 주십시오.

- 보험금의 지급 사유
- 보험금액(계약금액)
- 보험 기간(보험 계약 기간)
- 보험료

2. 보상 기간 중에 아래의 운동 등을 행할 경우에는 확인해 주십시오.

- 아래의 운동 등을 행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는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분명한 점은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또는 인수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것)
 - 루지, 봅슬레이, 스킨레톤
 - 항공기(글라이더, 비행선 제외)의 조종(업무상의 항공기 조종은 제외)
 -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 라이트기, 울트라 라이트기 등을 말하며, 패러플레인 등의 낙하산형 초경량 동력기를 제외합니다.) 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 자동차 등의 승용구에 의한 경기·시운전 등

3. 중요사항설명서(계약 개요, 주의 환기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

특히 '주의 환기 정보의 설명'에는 '주요 면책 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등' 등 고객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정보 및 '고지 의무·통지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보험에 관한 질문, 문의 사항은...

<인수 보험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공무 제2부 분쿄 공무실
〒102-8014 도쿄도 지요다구 3-6-4
TEL: **0120-587-050**
www.tokiomarine-nichido.co.jp

●보증인 보상에 대해서는...

<계약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학생지원부 학생보험과
〒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TEL: **03-5454-5275**
http://www.jees.or.jp/

문의처

사고 연락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0120-881-503**

수신자부담전화 이용 방법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입니다.

지정분쟁해결
기관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ADR센터(지정분쟁해결기관)

 **0570-022808** <통화료 유료>

IP 전화에서는 **03-4332-5241**을 이용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15분~오후 5시
(토·일·공휴일·연말연시는 휴일입니다.)

손해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대응하는 것 외에 손해보험 회사와의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의 불만 접수 및 손해보험 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 지원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